

의안번호	제265호
의결연월일	2016. 6. 23

예산군 행복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6. 5. 30 김만겸, 백용자, 임영혜 의원
- 나. 회 부 일 자 : 2016. 6. 14
- 다. 상 정 일 자 : 2016. 6. 23

제222회 예산군의회(제1차 정례회)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
2. 제안설명 요지(의원 : 김 만 겸)

가. 제안이유

- 자발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을 통한 주민 스스로가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어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,
- 마을만들기 사업의 체계적, 효율적 추진을 위한 위원회 설치와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운영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의 전문화를 도모코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제1장 총칙을 규정

(목적, 정의, 기본원칙, 주민의 권리와 책무)
(안 제1조 ~ 안 제4조)

○ 제2장 주민의 참가와 책임을 규정

(주민과 마을과의 관계, 주민의 책임과 의무)
(안 제5조 ~ 안 제6조)

○ 제3장 마을만들기 추진체계

(마을추진위원회 구성, 전담부서 설치, 마을만들기 행정지원 협의회
설치·운영,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)
(안 제7조 ~ 안 제10조)

○ 제4장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위원회를 규정

(설치 및 기능, 구성, 임기 등, 위원장의 직무, 회의, 관계부서의
협조, 수당)
(안 제11조 ~ 안 제17조)

○ 제5장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

(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, 기본계획의 승인)
(안 제18조 ~ 안 제19조)

○ 제6장 마을만들기 사업의 발굴과 체계화를 규정

(사업의 발굴 및 추진, 사업의 체계화와 단계 설정)
(안 제20조 ~ 안 제21조)

○ 제7장 마을만들기 사업의 추진절차를 규정

(예산 반영 및 지원, 사업신청, 사업성검토 및 선정, 사업지구 관리, 전문가 지원, 분석 및 평가, 포상)

(안 제22조 ~ 안 제28조)

○ 제8장 중간지원조직을 규정

(중간지원조직의 설치, 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, 지원사업, 수탁 기관의 자격과 선정, 민간위탁 및 운영, 지도·감독)

(안 제29조 ~ 안 제34조)

○ 제9장 지원의 취소 등 규정

(지원 취소 및 지원금 회수 등, 위탁계약의 해제 등, 다른 법령과의 관계, 준용, 시행규칙과 지침)

(안 제35조 ~ 안 제39조)

3. 검토보고요지(전문위원 : 강 윤 구)

○ 최근 우리군은 저 출산과 노령인구의 증가, 젊은 인구의 도시 지역으로의 유출 등으로 인하여 지역 발전의 역량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임.

○ 마을만들기 사업의 체계적, 효율적 추진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와 중간지원조직의 설치운영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의 전문화를 도모하여,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써,

○ 지방자치법 제22조

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5조, 제46조

농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4조

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를

근거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

○ 관련 조례안을 검토한바

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

4. 질의·답변요지

○ 생략

5. 토론요지

○ 없음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

○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